

2021. 10. 28.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 개선 방안

**박규령**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pgrland2020@suwon.re.kr

## 요약

- 고가도로 및 고가철도 하부공간이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원시 고가하부 공간의 가용지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위치, 접근성, 안전, 현재 활용용도 등을 조사함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재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종합지침 마련이 필요한데 수원시의 고가하부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운용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고가 하부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적인 측면, 디자인 기준적인 측면, 용도적인 측면 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과 세부적인 지침이 포함된 제도 수립 방향을 제시함

## 정책제안

- **기본방향** : 고가 하부공간 관리 및 활용 증진, 고가 하부공간 활용 설계가이드, 제도개선 등
- **하부공간 개선 방향**
  - ① 고가별 기능, 물리적 특징과 개선 방향 제시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①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목적, 정의
  - ② 시장의 책무
  - ③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 ④ 점용허가 기준 등

Keyword : 고가도로 하부공간, 하부공간의 활용, 하부공간의 관리, 공공디자인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수원시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방치되어 도시 미관 및 안전, 방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고가하부는 흉물로 방치되어 슬럼화 현상까지 보여 오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고가하부 활용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곳의 공간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원시는 2007년 동수원고가차도 하부공간 개선 이후 다른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수원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고가도로 현황 분석을 통하여 활용 방안에 따라, 잠재적인 가용지로서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가도로 및 고가철도 하부공간이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 공간의 활용 및 계획 기법에 대한 연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수원시 내 고가하부 공간 중 저·미이용 되고 있는 곳이 존재하며 현재 활용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유휴공간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여 잠재적 가용지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2 연구의 목적

- 고가하부 활용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적정대상지 도출, 이에 대한 활용계획 모색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주변 현황 분석
  - 고가 하부공간 및 주변 일대 현황조사 및 분석
- 분석을 통한 고가하부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 제안
- 사업화 진행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례 검토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립

#### 수원시정연구원 이슈 & 포커스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II. 고가도로 하부공간 현황과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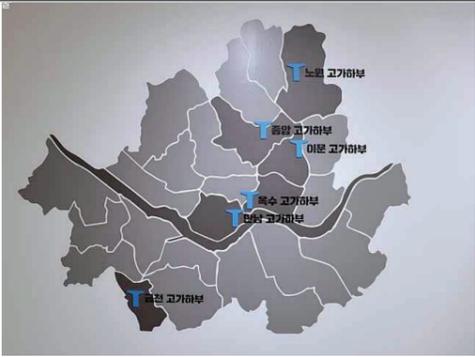
### 1 고가도로 하부공간

- (정의) 고가도로 하부공간이란 아래에 제시된 형태의 지역처럼 교통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한 지역
  -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한 지역
  -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 ※ 고가도로는 교통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지면 위에 공중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입체적으로 조성한 도로를 말함
- 어둡고 칙칙한 고가하부를 이색적 구조물로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풍부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를 분절하는 공간을 활동하는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통합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임
- 마을 활동과 함께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이러한 하부공간의 가용지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위치, 준공일, 관리주체, 접근성, 안전, 현재 활용용도 등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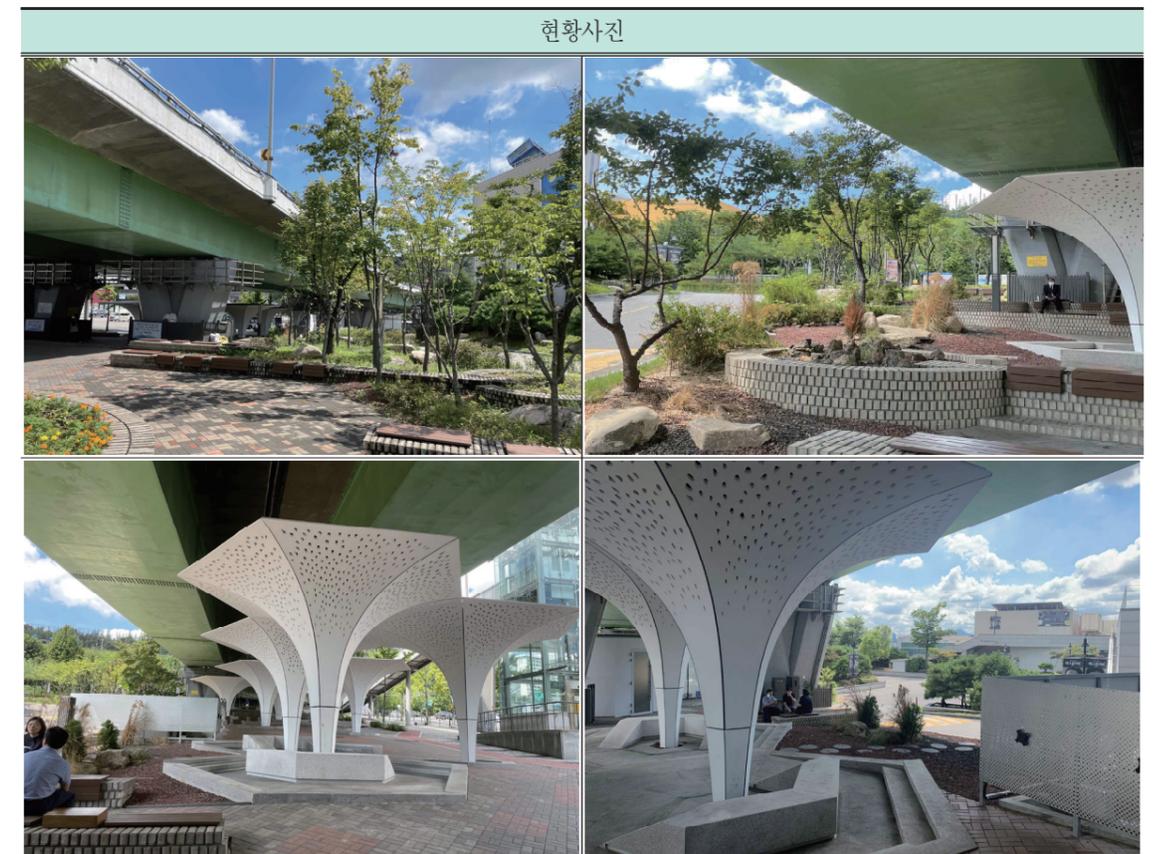
### 2 국내 사례

- 국내 사례는 고가하부 활용사례, 문화·예술 공간의 관리 사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사례를 대상으로 고가하부 입지형태, 사용용도, 관리 및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수원시의 대상지 선정 제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주차장(공공 차량기지 포함) 및 창고나 도로,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고가 하부공간에 임시 주거용 모듈러 주택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의 시설물로 활용하는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서울로 7017’ 재생사업 성공 이후 고가도로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을 시도 중
  - 서울시 고가 하부공간 183곳 중 고가차도 하부공간이 130곳, 고가철도 하부공간이 53곳 있으며 이 가운데 적극 활용은 10%에 지나지 않았음.
  - 2018년 4월 성동구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을 시작으로 6곳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표 1] 서울시 고가하부 위치

현황사진	고가명	활용 용도
	옥수 고가하부	녹지조성, 시민 공공문화 공간
	이문 고가하부	야외 휴게, 문화, 놀이, 체육 개방형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생활체육, 시민 복합문화 공간
	한남1 고가하부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
	금천 고가하부	스마트도서관, 시민 복합문화 공간
	노원 고가하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경관 개선

[표 2] 서울시 고가하부 현황1



- 고가명 : 한남1 고가하부
- 현황분석
  - 지명공모로 국내 5개 팀을 지명해 4개 팀이 작품을 접수했고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함
  - 고가 하부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고 지하철 역 출구에서 70m도보 이동으로 접근성이 좋음
  - 일반길과 이어지는 경계선도 조경과 역사 등 보행로와 조화로운 조성으로 시민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던 고가하부를 생활SOC(사회간접자본)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17년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18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활용 가능한 37곳을 선정하여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임

[표 3] 서울시 고가하부 현황2



- 고가명 :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 현황분석
  - 일반 공개공모로 총 9개 작품이 제출됐고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함
  - 주변 맥락과 보행동선을 고려해 경관적 접근이 뛰어나고, 목재 구조의 경쾌함으로 하부공간의 경직성을 상쇄함
  - 영유아와 유소년, 노년 등 다양한 지역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음

○ 한남1 고가하부와 종암사거리 고가하부의 경우 수원시와 유사하게 교통량으로 인한 매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유해요소가 많은 지역임

○ 종암사거리의 경우 테니스코트 4개 정도의 면적(1,343㎡)이고 주변의 통행량을 감안해 반투명 지붕과 목재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설치하였는데 고가 높이가 10m이며 ‘생활 체육 중심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농구와 풋살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과 요가, 명상 등 정적인 운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 중

### 3 해외 사례

○ 해외 사례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도로 및 철도 활용 관련 11개국의 고가하부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음.

- 해외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례를 검토한 결과 활용 용도에 따라서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휴게체육시설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의 5가지 용도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주거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음

[표 4] 용도별 해외 사례

용도	사례			
상업시설	GAKUDAI KOUKASHITA(일본)	2K540 AKI-OKA ARTISAN(일본)	mAAch ecute KANDA MANSEIBASHI(일본)	CHABARA(일본)
교육시설	KEIKYU KIDS LAND(일본)	COTONIOR(일본)	STREET CHILDREN HOME(베네수엘라)	KIDSTAY BARAKI(일본)
문화시설	KOGANE.HINODE STUDIO(일본)	FOLLY FOR FLYOVER(영국)	KOU.KA.SHITA ON.GAKU.SAI(일본)	TS KWOK CENTER(홍콩)
휴게체육시설	DARLING HARBOUR(호주)	UNDERPASS PARK(캐나다)	THOMSON FLYOVER(싱가포르)	BURNSIDE(오스트렐리아)
복합 커뮤니티시설	WESTWAY TRUST(영국)	THAMESMEAD(영국)	A8ERNA(네덜란드)	-
				-

용도	사례			
주거시설	SHUIKOUSI FLYOVER(중국)	YOKOJIMA(일본)	SHINAGAWA(일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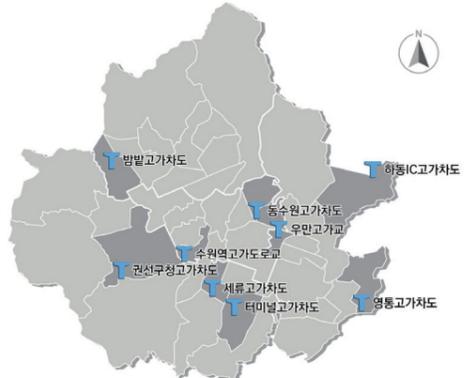
- 공간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조성되어 있던 고가 하부공간의 노점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음.
  - 대부분 고가 하부의 빈 공간을 활용한 건축물로 조성공간의 길이에 따라 쇼핑몰 형태 또는 소규모 공방 형태로 이용
  - 고가 상부공간을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휴게기능을 도입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간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둡고 부정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이용·접근 가능하며 밝고 긍정적인 공간조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당 공간의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의 특색을 반영하였음
-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단순한 공간 조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이용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간 교류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음
- 이처럼 고가 하부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하부공간의 규모와 위치, 입지조건, 주변과의 연계, 시설조성 후 기대 가능한 파급효과 및 운영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4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현황

- 고가 하부공간 적정 대상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가형태 시설물 중 규모와 접근성 및 유동인구를 고려한 공간 및 입지적 측면, 도시공간으로서의 상징적인 측면, 지역기여 가능성 측면으로 살펴 봄
- 수원시에는 총 9개의 고가도로가 있고 이중 세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리주체는 해당 지역 구청의 건설팀 또는 도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운영주체는 터미널고가차도, 밤밭고가차도의 경우 수원 도시공사가 세류고가차도는 민간운영으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표 5] 수원시 고가하부 위치

현황사진	고가명	활용 용도
	동수원고가차도	-
	우만고가교	-
	수원역고가도로교	약간의 체육 공간
	터미널고가차도	거주자·공영 주차장
	세류고가차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권선구청고가차도	-
	영통고가차도	-
	하동IC고가차도	-
	밤밭고가차도	공영주차장

[표 6]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현황

구분	고가명	위치	관리주체
팔달구	동수원고가차도	인계동 1047 일원	팔달구청 건설팀
	우만고가교	우만동 134-6 일원	
권선구	수원역고가도로교	세류동 284-4 일원	권선구청 도로정비팀
	터미널고가차도	권선동 1212 일원	
	세류고가차도	세류동 539-12 일원	
영통구	권선구청고가차도	고색동 894-77 일원	영통구청 건설팀
	영통고가차도	영통동 1069 일원	
장안구	하동IC고가차도	하동 1049-2 일원	장안구청 도로정비팀
	밤밭고가차도	울전동 435 일원	

[표 7] 수원시 고가하부 공간 주차장 이용현황

고가명	이용자	주차가능대수	연도별 이용객수				
			2017	2018	2019	2020	2021.10
터미널고가차도	공영	51	20,223	18,843	20,334	10,324	12,121
	거주자	44/46	-	-	-	-	-
세류고가차도	거주자	52/53	-	-	-	-	-
밤밭고가차도	공영	71	100,434	127,852	124,646	99,023	75,378

[표 8]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현황

구분	주변 현황	고가 위치
팔달구	<b>①동수원고가차도</b> 인근에 8개의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성 용이, 버스정류장간 약 400m, 주변 주차 어려움	
	<b>②우만고가교</b> 인근 주거시설 중심에 위치함, 청소년문화공원에서 약 300m 도보 이동	
권선구	<b>③수원역고가도로교</b> 인근에 수원역(지하철)로 약200m 도보로 이동,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00m 도보로 이동, 수원역 공영주차장에서 접근 가능	
	<b>④터미널고가차도</b>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약 100m 도보로 이동,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이용가능	
	<b>⑤세류고가차도</b> 세류 행복복지센터앞 20m 이동, 거주자주차장 이용가능	
	<b>⑥권선구청고가차도</b> 권선구청에서 약 350m 도보로 이동, 인근공원에서 약 750m 도보로 이동	
영통구	<b>⑦영통고가차도</b> 인근에 망포역(지하철)에서 약 800m 도보로 이동, 영통역(지하철)에서 약 700m 도보로 이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약 20m 도보로 이동	

구분	주변 현황	고가 위치
영통구	<b>⑧하동IC고가차도</b>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주거단지에서 공원 진입 시 차량만 횡단 가능하고, 보행자 횡단 불가능	
장안구	<b>⑨밤밭고가차도</b> 인근 성균관대역(지하철)과 성균관대학교와 바로 인접하여 쉽게 접근 가능	

- 전체 하부공간과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수원역고가도로교가 활용 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해 보임.
  - 현재 가건물 형태의 체육시설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 다른 용도로의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표 9] 하부공간 주요 현황

주요현황	현황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명 : 동수원고가차도</li> <li>•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화가 되어 있으며 길이 있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음</li> <li>-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 사회활동을 위한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음</li> <li>- 별도의 휴게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명 : 우만고가교</li> <li>•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빌딩, 아파트 등 주거시설들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음</li> <li>- 녹지화가 되어있으나 하부 공간 내에서 이동 불가능</li> </ul> </li> </ul>	

주요현황	현황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수원역고가도로교</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고 쾌적하며 새로 수리한지 얼마 안되어 보임</li> <li>- 체육시설로 추측되는 장이 하나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음</li> <li>-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터미널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이 넓고 약간의 녹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중</li> <li>- 주차공간이 넓고 주변에 이마트, 쇼핑몰, 터미널을 비롯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음</li> <li>- 주변시설을 이용한 이용객이 설만한 공간이 따로 없는 것이 아쉬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세류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고가에 비해 높이가 월등히 낮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 주차이후 이용자 동선이 미비하며 주차이용객이 이용할 횡단보도가 한쪽 편으로만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권선구청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은 협소하나 신축된 것으로 보이며 협소한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임</li> <li>- 주변에 녹지가 전혀 없어 삭막한 느낌 고조됨</li> </ul> </li> </ul>	

주요현황	현황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영통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있고 공원이 있음</li> <li>- 횡단보도가 길어 중간에 신호가 바뀌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모호함</li> <li>- 사람들의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보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하동IC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화도로로 이어지는 길로 차량만 이용 가능</li> <li>- 인근 빌라 및 아파트등 주거시설이 있지만 고가로 이동 불가능</li> <li>-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차량 정차도 불가능하며 막혀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가명 : 밤밭고가차도</li> <li>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나무와 녹지가 많은 편임</li> <li>- 주차공간이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들어 밝은 조명설치가 필요해보임</li> <li>- 불필요한 펜스설치로 이용객 동선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li> </ul> </li> </ul>	

○ 상태등급(안전성)은 권선구청 고가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B등급 임.  
 -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의 발생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표 10]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현황

고가명	준공일	연장	넓이(m)	길이(m)	구분	상태등급
동수원고가차도	2007.05	왕복 4차선	18	1200	1종	B
우만고가교	2004.08	왕복 4차선	16	660	1종	B
수원역고가도로교	2003.년 최초 설치 2014년 추가 설치	왕복 4차선	18	1300	1종	B

터미널고가차도	2007	왕복 4차선	18	850	1종	B
세류고가차도	2007	왕복 4차선	18	518	1종	B
권선구청고가차도	2020	왕복 4차선	19	678	1종	A
영통고가차도	1997.10	왕복 4차선	16	600	1종	B
하동IC고가차도	2002.09	왕복 4차선	18	600	1종	B
밤밭고가차도	2005.03	왕복 4차선	18	831	1종	B

### III. 고가도로 하부공간 관련 법령 현황

#### 1 현행 법령

##### 1) 도로법

-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을 정함으로써 시설물인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취지임
- 「도로법」은 민간이 도로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용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① 점용 허가, ② 점용공사, ③ 점용료 징수, ④ 변상금, ⑤ 원상회복 등이 그 내용임
- 도로구역 내에는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줄 경우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대상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

<p><b>제73조(원상회복)</b></p> <p>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p> <p>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p>
<p><b>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b></p> <p>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li> <li>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li> <li>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li> <li>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 </ol>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광역·도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설정) 수립 및 시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정, 개발행위 허가 등을 규정함
- 즉, 「국토계획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활용하고, 기반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 계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임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기반시설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한편, 「국토계획법」 및 하위 법령은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건축물 등의 종류·범위·용도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p> <p>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b>제2조(기반시설)</b></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li> <li>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li> <li>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li> <li>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li> <li>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li> <li>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li> <li>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p> <p><b>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b></p> <p>①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7. 1., 2004. 12. 3., 2005. 10. 7., 2012. 6. 28., 2012. 10. 31.)</p>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2 지방자치단체 조례**

**1)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역 일대(만리동1가부터 남대문로5가까지 구간)의 고가도로를 보행로 개념인 ‘서울로 7017’로 개발하였고, 현재 보행로 및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는 서울로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서울로 7017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고가하부에 시설물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① 점용허가의 원칙(제2조), ② 점용물건의 구조(제3조), ③ 주요구조와의 이격등(제4조), ④ 사전협의(제5조), ⑤ 허가의 조건(제6조) 등임

**※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제1조(총칙)**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 및 고가도로의 노면하부(이하 「고가하부」라 한다)의 점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단, 철도보호지구내 철도시설물(철도교량 하부, 역사 하부 등)은 적용을 제외 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원칙)** ① 고가하부 점용은 도로시설물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안전성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한다.

② 고가하부의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9호에 명시된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③ 다음의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고가하부의 점용은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1. 고가도로 주위의 도로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것
2.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3.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4.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5. 유류가스 등 인화성물질 적재 차량의 주차
6.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7. 기타 도로관리기관에서 도로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점용물건의 구조 등)** ① 점용물건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내화구조 또는 그 외 화재로 인한 고가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에서 필요한 소화시설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벽체는 원칙으로써 고가도로의 구조를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것.
4. 고가하부로부터 차도 등에 튀어나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할 것
5. 점용물건을 이용하는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해 고가구조물(교각, 슬라브 등)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것
6. 고가도로로 부터의 물건의 낙하 등 고가하부 점용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주체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점용물건의 외관 등은 도시미관을 충분히 배려할 것.

**제4조(주요 구조와의 이격 등)** 점용시설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주요 구조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1.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의 1.5m 이상으로 한다(단, 고정물 적치시 2.0m 이상).
2. 고가 거더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으로 한다.
3. 주차장은 도로시설물 형하고(고가하부 노면에서 거더하부 사이의 높이)가 4.5m 이하인 구간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단, 승용차만을 주차하는 곳은 2.5m로 완화 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부서에서는 점용구간이 고가하부인 경우 점용허가시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 사전협의의 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조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 다음사항을 조건을 붙이도록 한다.

1. 도로시설물에 관한 점검 및 공사에 따른 점용물건의 이전 개축, 제거 등 도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부담할 것.
2. 도로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공사 등을 위한 도로관리자의 점용구역 내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3.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화재에 대비하여 점용시설에 소화기를 상시 비치할 것
5. 점용허가증 및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점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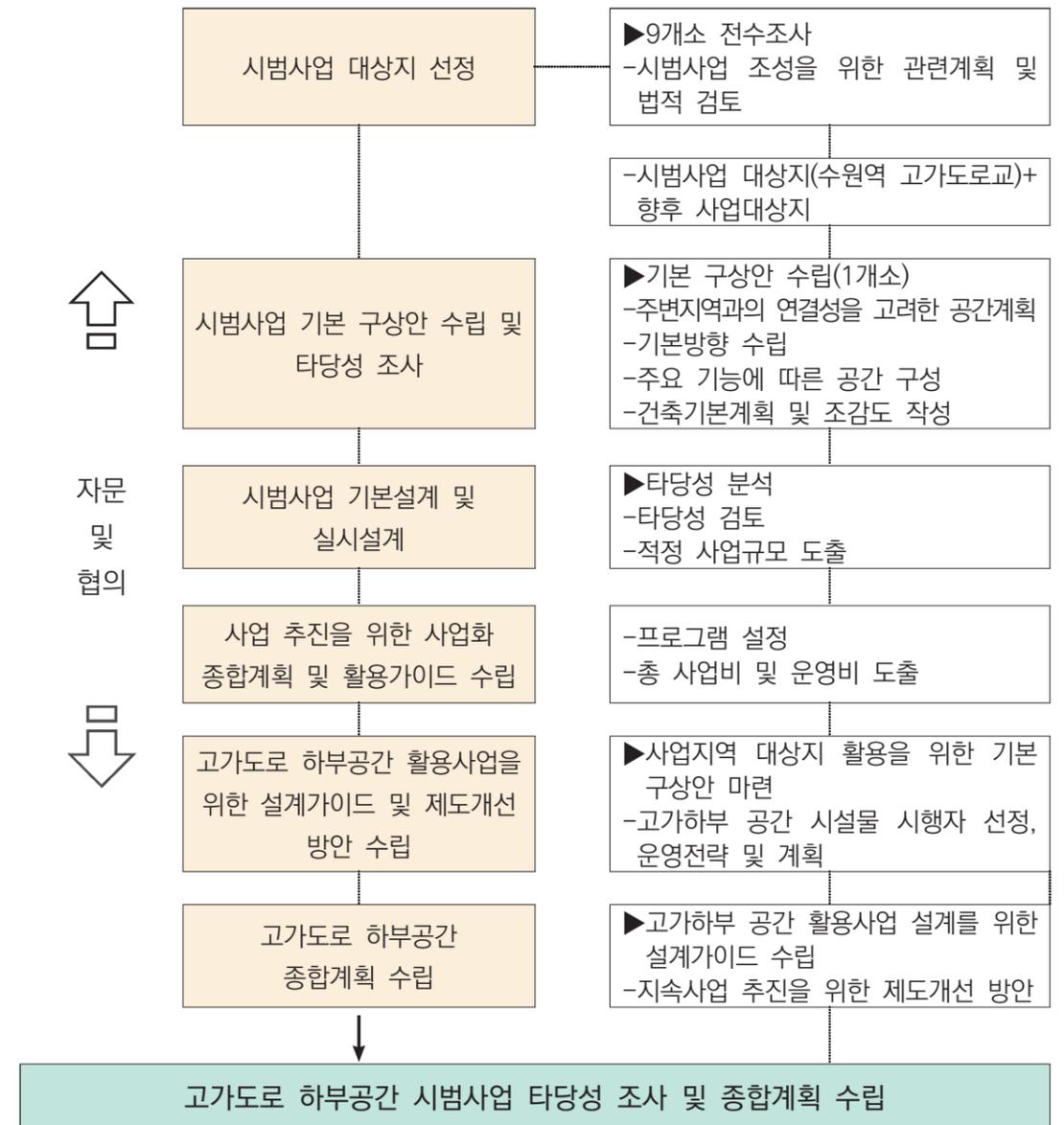
**제7조(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법규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다.

## 2) 수원시 기타 조례

- 수원시는 도시계획 및 시설·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수원시 건축 조례」,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수원시 도시관리심의회 조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을 두고 있음
- 위 조례들은 상위법인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들로서 그 내용이 위임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므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특정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IV.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개선에 관한 제도 수립 방향

## 1 기본방향 설정



[그림 1]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개선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고가 하부공간의 현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조례)검토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향후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고가 하부공간을 선별할 것을 권장함

- 장기적인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활용과정을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공유해나갈 필요도 있음
  - **일반 참여에 의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및 고가 하부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하부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실현하도록** 해야 함
-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2 하부공간 개선 방향

-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활용성이 낮아 공지로 비워져 있는 상황이며 **잠재적 가용지로 볼 수 있는 곳은 수원역고가도로교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채광부족으로 어둡고 폐쇄적인 인식과 함께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음
- 고가 하부공간의 **환경적, 주변지역과의 맥락, 사용자, 향후 도시적 기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용도, 공간조성 등을 살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함

[표 11]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개선방향

고가명	기능적 특징	물리적 특징	개선 방향
동수원고가차도	미활용	걸어서 이동 가능한 공간	현재 산책로 정비
우만고가교	녹지화 되어 있으나 이용은 불가능	정비되지 않은 녹지와 조명	녹지 정비와 간접조명 설치
수원역고가도로교	일부 체육시설	정돈된 넓고 쾌적한 공간, 관리가 미비한 상황	한남1하부공간과 비슷한 오픈형 녹지를 조성하여 수원역 방문객 또는 롯데몰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터미널고가차도	주차장으로 활용	넓은 공간과 일부 녹지	현재 있는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인근 쇼펍몰, 터미널을 방문한 시민의 휴게 공간 조성
세류고가차도	주차장과 횡단 시 보행 공간	낮은 천장과 주차 후 이동 동선 미비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동선개선 및 횡단 보행 이용객을 위한 조명설치
권선구청고가차도	미이용 용지 존재	접근 불가능	현재대로 관리
영통고가차도	약간의 녹지와 공간 존재	좁은 공간과 접근 어려움	고가도로의 표면의 넓고 노후된 느낌 개선을 위한 도색
하동IC고가차도	차량 정차도 불가능	막혀있는 하부 공간	활용 불가능
밤밭고가차도	주차장으로 활용	어두운 공간과 불필요한 펜스	펜스를 철거하고 밝은 분위기로 전환을 위한 직·간접조명 설치

## 3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방안

- 고가 하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소음, 진동, 화재 등 안전 및 기술 문제, **현행 법규에 관련된 제약사항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재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기준이 관건**인데 수원시의 고가하부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운용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담당공무원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측면, 디자인 기준적인 측면, 용도적인 측면 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과 세부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 개선(안)은 부록과 같음

### 부록 수원시 고가 하부공간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가도로 하부공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수원시가 관리하는 도로 중 고가 형식으로 개설된 도로의 지면에서부터 도로까지의 지상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공익 행사 등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 계획)

- ① 시장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2.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에 관한 연간 운영 계획
  3.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

- ① 시장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행사
  2. 공원, 카페 기타 시민의 휴식을 위한 여가 공간 개설
  3. 그 밖에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가도로 하부공간 디자인 위원회 설치)

- ①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로 및 시설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회의원
  -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다. 그 밖에 도시 계획 또는 도시 디자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가도로 하부공간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4. 고가도로 하부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관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1조(점용허가 등)

- ①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로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자전거도로, 숲길 등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감면, 점용기간, 원상회복 그 밖에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서울시 2017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민승현 2013 서울시 고가 하부공간의 재구성 방안 연구

## 〈법·조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0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조사.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2018. 해외 도로 관련법 조사. <http://world.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2021. 도로 관련법 조사. <https://www.moleg.go.kr/>  
도로법 [시행 2021.2.5.] [법률 제1695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0.8.] [법률 제1847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9.10.] [대통령령 제319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5.] [서울특별시조례 제7761호]  
수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1.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19호.]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 2020.7.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73호]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시행 2018.4.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77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7.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88호]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7.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65호]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13.]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16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0. 11. 9.]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095호]

## 〈기타 자료〉

ASLA 홈페이지, 2016. UNDERPASS PARK 조사, <https://url.kr/wmlzat>  
ASSEMBLE 홈페이지, 2011. FOLLY FOR FLYOVER 조사, <https://han.gl/4dFkn>  
JR 홈페이지, 2013. COTONIOR 조사. <https://han.gl/Si0vA>  
SG매거진 홈페이지, 2015. THOMSON FLYOVER 조사, <https://url.kr/9kr8a6>  
구글어스, 2017. DARLING HARBOUR 조사. <https://url.kr/367yue>  
구글어스, 2020. WESTWAY TRUST 조사, <https://url.kr/2k61xv>  
구글어스, 2021. THAMESMEAD 조사, <https://url.kr/ry1v62>  
도요 코센 홈페이지, 2017. GAKUDAI KOUKASHITA 조사, <http://xn-b9j5eta.com/toyoko/>  
도로 관광공식 홈페이지, 2019. 2k540 AKI-OKA ARTISAN 조사, <https://han.gl/gob70>  
블로그, 2011. A8ERNA 조사, <https://url.kr/qxwxyz>  
블로그, 2013. SHUIKOUSI FLYOVER 조사, <https://url.kr/3grbcs>  
블로그, 2015. STREET CHILDREN HOME 조사, <https://han.gl/2PozC>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 홈페이지, 2020. <https://blog.naver.com/120seoulcall/222264004530>  
위키피디아, 2019. BURNSIDE 조사, <https://url.kr/mrwqoj>  
지요다 관광 홈페이지, 2021. CHABARA 조사. <https://han.gl/a0fOS>  
케이큐 보육원 홈페이지, 2021. KEIKYU KIDS LAND 조사, <https://han.gl/reQBp>  
코겐 스튜디오 홈페이지, 2012. KOGANE.HINODE STUDIO 조사, <https://han.gl/2a8XE>  
타입아웃 홈페이지, 2018. mAACH ecute KANDA MANSEIBASHI 조사, <https://han.gl/u2laG>  
한큐나가츠 음악제 홈페이지, 2013. KOU.KA.SHITA ON.GAKU.SAI 조사, <https://han.gl/m7cdD>  
홍콩여성연맹 홈페이지, 2011. TS KWOK CENTER 조사, <https://url.kr/32gl5u>  
大山顯, 2013. 高架下建築, 洋泉社, SINAGAWA관련 이미지  
大山顯, 2013. 高架下建築, 洋泉社, YOKOJIMA관련 이미지



발행인 | 김선희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http://www.suwon.re.kr)

※ 이 SRI 이슈 & 포커스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